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157
----------	-----

2019.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 라. 상정일자 : 2019년 4월 18일
 -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태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 내용 중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바꾸고, 일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변경함
 - 현행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개정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9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보완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7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4월 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
------------------	-----

제출연월일 : 2019년 4월 9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 내용 중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바꾸고, 일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변경함
 - 현행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개정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9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2조)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임
6. 비용추계서 : 불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한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종합발전계획
3.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활성화 협의회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전문가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후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3.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 정책 수립

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4. 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및 시·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4.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

5.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연구 조사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지원 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선정심의회는 지역공동체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4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혀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의 분석·평가
5.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3. 주민대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19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4조(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등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 주도의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지역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5. 지역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2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및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 8,000천원(매년)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비 : 500,000천원(설치년도)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 128,000천원(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운영수당 : 도비(100%)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비 : 도비(100%)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민간협력공동체 과장 김현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8,000	636,000	136,000	136,000	136,000	1,052,000
지역공동체활성화 위원회 운영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설치		500,000				500,000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128,000	128,000	128,000	128,000	512,000
재원 조달	8,000	636,000	136,000	136,000	136,000	1,052,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8,000	636,000	136,000	136,000	1,052,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 · 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